

# 하도급 부조리 이제그만!!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 1 건설공사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 건설업을 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관련기관에 등록

- 종합건설 : 시·도
- 전문건설 : 시·군·구

※ 예외) 1건의 공사가 5천만원 미만인 종합공사 또는 1천5백만원 미만인 전문공사



### 시공자격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면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면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처벌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시공자격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영업정지(8개월) 또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 2 건설공사란 이런 것!



### 건설공사

-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합니다.



### 도급

-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하도급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물품납품으로 위장한 하도급은 불법

건설공사를 물품납품 등의 형태로 변경하여 하도급 하는 것은 저가 또는 불공정 하도급을 위한 편법입니다.

※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 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해체하는 것은 건설공사에 포함되므로 반드시 건설공사 하도급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 3 불법 하도급 영원히 퇴출!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9조

### 부실공사와 대금체불의 원인!

불법유형	내용	처벌
다단계(재) 하도급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영업정지(4~8개월) 또는 과징금, 징역(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일괄 하도급	당해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동일업종 하도급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공사내용에 상응하지 않은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무면허 시공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시공	징역(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불법 하도급을 받는 것은 위험합니다

원청이 불공정행위를 하거나 대금을 체불하여도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 4 건설기계임대차 체불 예방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 계약서 작성은 필수!

- 건설기계임대차 계약당사자는 임대료, 임대차 기간, 건설기계 1일의 가동시간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받은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처벌규정

####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당사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대여대금지급 보증서도 필수!

- 건설업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발급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처벌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82조 제1항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1개월) 또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 체불방지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

계약서 작성과 대금지급 보증서 교부요구는 당연하게... 서울시가 지원합니다.



# 5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

근로기준법 제17조, 제43조

## 근로계약 서면 교부는 의무!

- 건설업체는 건설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처벌규정**

**근로기준법 제114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근로자 임금체불 안돼요!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처벌규정**

**근로기준법 제109조**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6 하도급계약서 이젠 당당하게...

##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처벌받아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 도급금액, 공사기간, 공사내용, 대금지급 방법 등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계약서는 서로 주고 받아 보관하여야 합니다.

**처벌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5조의3**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및 과징금(하도급 금액 2배 범위)이 부과됩니다.



## 불공정 피해 예방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으로...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여야 불공정 피해를 예방합니다.

**불공정 계약조항과 특약은 무효**

계약금액 또는 계약기간 변경 불인정, 상대방에게 책임전가 및 정당한 이익침해 등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조항과 특약은 무효입니다.

## 추가공사는 반드시 서면으로 요구!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의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 하수급인에게 설계변경 등에 따른 추가·변경공사 요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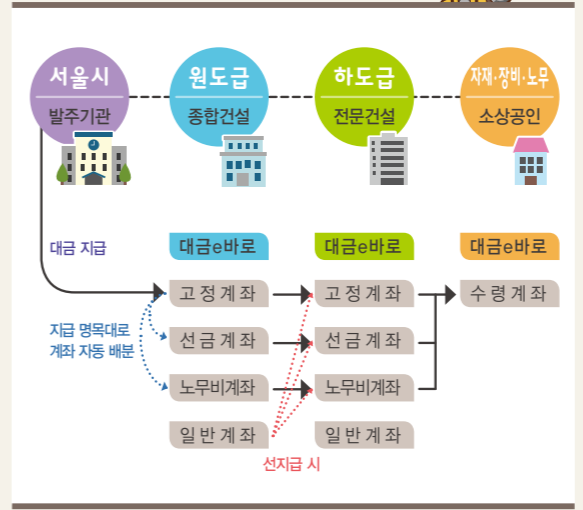
**처벌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5조의3**  
추가·변경공사를 서면으로 요구(발급) 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과징금(하도급 금액 2배 범위)이 부과됩니다.

# 7 서울시 「대금e바로」를 아시나요?

## 투명하게 대금을 지급합니다.

-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건설현장의 하도급대금,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 등이 적기에 적정하게 지급 되도록 지급내역을 자동적으로 수집하고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 지급 대상을 빠짐없이 등재하여야 체불 피해를 예방합니다.

- 기성금 지급시 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대금 지급 대상자와 금액을 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 8 하도급 부조리는 서울시에 신고하세요!

##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전화 02-2133-3600, 팩스 02-2133-1302, 서울시 홈페이지(응답소)

-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근로자 임금 등 체불, 기타 불공정 하도급, 공사부조리, 부실공사 사항을 해결합니다.  
※ 단, 민간발주 공사에서의 근로자 임금 체불은 고용노동부에 신고(국번없이 1350)하시면 됩니다.

## 하도급 법률 상담센터

전화 02-2133-3008, 팩스 02-2133-1302, 이메일 homin@seoul.go.kr

- 공사비 미지급, 부당한 감액·위탁취소, 불법·불공정 하도급으로 인한 피해 구제방법 및 절차에 대해 전문 변호사인 하도급 호민관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